충청남도 고시 제2020-93호

당진시 수청지구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당진시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0. 3. 6.

충청남도지사

제1조(목적)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표시제한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일원
2. 구 역 : 당진시 수청지구, 수청1지구, 수청2지구(총 면적 : 1,582,120㎡)

제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하며, 입체형인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옥상간판 및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설치한 벽면이용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립형 지주 간판과 건물 최상단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은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호명과 건물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간판 총수량에 포함한다.

③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에 한하여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며, 가격 표현은 금지한다.

④ 광고물은 고채도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기업의 심볼(로고, 마크)에 한하여 기업 고유색을 사용(상표등록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다.

⑤ 모든 광고물의 디자인에는 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제4조(금지되는 광고물) 특정구역내에서는 돌출간판(소형돌출간판 :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 포함), 공연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①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가로형으로 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벽면 미관을 위하여 베이스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5층 이하의 정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의 가로폭 범위 이내로 하되 최대 10m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범위 이내로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글자크기는 70cm 이내로 한다. 다만, 건물의 4층이상 높이의 간판 글자크기는 90cm 이내로 허용한다.

④ 건물의 최상층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① 개별업소 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국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하며, 상업지역에 위치한 5층 이상 건물에 입주한 5개업소 이상에 한정하여 당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건물 부지 내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주이용간판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 이내, 가로 폭은 1m 이내로 한다.

③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① 상업지역에 위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4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 한하여 입체형(업소명만 표기)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② 건물옥상 바닥의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글자크기는 높이 2m 이내로 한다.

제8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높이 20cm 이내의 띠 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이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류(LED조명 등)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상업지역 외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②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10조(광고물심의 등)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당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1. 건물여건 또는 광고물의 특성상 이 고시 내용을 따르면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정구역 안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적용의 특례)

① 이 고시의 규정이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과 상충될 경우에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또는 약국,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을 지주이용간판 또는 돌출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